두류 파크 KCC 스위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18일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광역시/수성구 제외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제한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8)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지등록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19.06.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시는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하나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전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호의2, 제7조 제8항, 제8조 제3항 및 입주권에 의거 분양일 및 납부일에 의거 "분양신청"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중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7조, 제66호로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조합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도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매매해지등 완납일(실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전환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6천만원(수도권은 9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문화 문화창작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최근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실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시뮬 연습"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무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본 주택의 해당소유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되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그렇지 청약인 다자녀가구다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지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이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있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인접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동을 배정받을 수 있고 자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최하층 우선배정 시 비대상자 포함하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시청약」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순위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증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7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된청약 당첨되실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36세대)는 일반공급 54세대에 포함된 세대라 실제 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하층으로 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19001079	01	59.9700A	59A	59.9700	20.1100	80.0800	41.5500	121.6300	35.2652	162	16	16	33	4	69	93	10
		02	59.9600B	59B	59.9600	21.7100	81.6700	41.5400	123.2100	35.9653	15	1	1	3	-	5	10	1
		03	75.9600A	75A	75.9600	24.4200	100.3800	52.6200	153.0000	44.2047	84	8	8	17	2	35	49	6
		04	75.9600B	75B	75.9600	26.1400	102.1000	52.6200	154.7200	44.9622	39	3	3	7	1	14	25	2
		05	84.9600A	84A	84.9600	27.4600	112.4200	58.8500	171.2700	49.5068	133	13	13	25	3	54	79	11
		06	84.9700B	84B	84.9700	28.9300	113.9000	58.8700	172.7700	50.1585	108	10	10	21	3	44	64	6
	합계										541	51	51	106	13	221	320	36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36세대)는 일반공급 54세대에 포함된 세대라 실제 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하층으로 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층별	세대수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1회 계약시	2회 계약후 7개월 이내	중도금(60%) 1회(10%) 2020.05.20.	2회(10%) 2020.10.20.	3회(10%) 2021.03.22.	4회(10%) 2021.08.20.	5회(10%) 2022.01.20.	6회(10%) 2022.06.20.	잔금(30%) 입주지정일
59A	1층	3	93,098,000	214,902,000	308,000,000	10,000,000	2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92,400,000
	2층	10	95,214,000	219,786,000	315,000,000	10,000,000	2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3층	10	97,330,000	224,670,000	322,000,000	10,000,000	2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96,600,000
	4층	10	99,446,000	229,554,000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5-9층	43	101,562,000	234,438,000	336,000,000	10,000,000	2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100,800,000
	10-24층	86	103,678,000	239,322,000	343,000,000	10,000,000	2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59B	1층	1	91,943,000	212,236,000	304,179,000	10,000,000	20,417,900	30,417,900	30,417,900	30,417,900	30,417,900	30,417,900	30,417,900	91,253,700
	2층	1	94,005,000	216,995,000	311,000,000	10,000,000	2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4층	1	95,819,000	221,181,000	317,000,000	10,000,000	2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95,100,000
	5-9층	4	97,935,000	226,065,000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10-24층	8	100,051,000	230,949,000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75A	1층	4	115,164,000	265,836,000	381,000,000	10,00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2층	6	117,884,000	272,116,000	390,000,000	10,000,000	2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3층	6	120,303,000	277,697,000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4층	6	123,023,000	283,977,000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5-9층	21	125,441,000	289,559,000	415,000,000	10,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10-24층	41	128,162,000	295,838,000	424,000,000	10,000,000	3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75B	1층	1	111,234,000	256,766,000	368,000,000	10,000,000	2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2층	2	113,955,000	263,045,000	377,000,000	10,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3층	2	116,373,000	268,627,000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층	2	119,093,000	274,907,000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5-9층	9	121,512,000	280,488,000	402,000,000	10,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10-22층	23	124,232,000	286,768,000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84A	1층	1	128,464,000	296,536,000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2층	11	131,487,000	303,513,000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3층	11	134,207,000	309,793,000	444,000,000	10,000,000	3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4층	11	137,230,000	316,770,000	454,000,000	10,000,000	3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5-9층	36	139,950,000	323,050,000	463,000,000	10,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10-24층	63	142,973,000	330,027,000	473,000,000	10,000,000	3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84B	2층	6	126,348,000	291,652,000	418,000,000	10,000,000	3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3층	6	129,068,000	297,932,000	427,000,000	10,000,000	3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4층	6	132,091,000	304,909,000	437,000,000	10,000,000	3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131,100,000
	5-9층	29	134,811,000	311,189,000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0-24층	61	137,834,000	318,166,000	456,000,000	10,000,000	3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36,8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공급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금번 모집공고를 통한 분양시 조원원 및 보루지 세대를 제외한 세대를 일반분양하며 해당 일반분양분에 대한 티맵불 도라인, 호수, 층 등 세부 내용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안내

공급상한금액(시)	주택형	59.9700A	59.9600B	75.9600A	75.9600B	84.9600A	84.9700B
	약식표기	59A	59B	75A	75B	84A	84B

※ 주택형이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이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 홈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하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하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이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 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이로 인해 공급면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이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 및 동 공용부분도 동일불로 향배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도로 등 기존 기부채납시설면적은 계약면적에 미포함됨) • 용도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산출된 면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주택형별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기 면적보다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장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 이상 이하 이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임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하는 입주금부터 납부하되 입주지정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 이후에 납부하고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되 만 1년 이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지정일 이후에 납부하되 만 1년 이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

두류 파크 KCC 스위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Ⅳ.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가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12.23(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시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두류파크 KCC 스위첸 견본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5-1)
일반공급	1순위	2019.12.24(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12.26(목)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청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시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본등 기존계약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사항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월일 (정본 기재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정본 기재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자녀(기정)의 자녀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미성년 자녀가 만19세로 미성년자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외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의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의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준창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미망인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기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기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기정)의 자녀를 부양기족으로 신청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미성년 자녀가 만19세로 미성년자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제1자 대한민 신청시 추가사항	O		임신증명서	청약자	임신의 경우
	O		임신진단서	청약자	외국인의 임증의 사례으로 공급신청 임신사실 제출 사례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이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지급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임금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지고 납부 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임금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지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지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지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일반공급 청약방법 • 본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해 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가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일반공급	1순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19.12.24(화) 08:00 ~ 17:30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주택청약 청기은행(KB)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9.12.26(목) 08:00 ~ 17:30		

▣인터넷 청약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시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이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신청기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시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시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재테크 - 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시뮬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감증명)이 청약 신청자가 가지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정보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청약자격 거주 개시일기준(세대원 전원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구간 위의 전반일을 기재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 포함) 통장 • 예금도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가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단 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청약자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시점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가주함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일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시 실질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르면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1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정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함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그밖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함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기한 지난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존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함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자정일 이후 발생하는 재세공급금에 대해서는 임차 및 전금반는 아니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나.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 의 시중으로 인한 건축시행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버스운전 소음포함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일반 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이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04.01 재개정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기존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없이 동일 주택 중 일부 세대에 청약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자는 청약일 기준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또한 청약접수 시 기재한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당첨자로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기존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첨자 발표 시 제공되는 주택소유 및 무주택 여부 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기존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자는 청약일 기준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또한 청약접수 시 기재한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당첨자로 관리함

두류 파크 KCC 스위첸 입주자모집공고

84A	타입→엔지니어드스톤	166,100	166,100	1,494,900	미선택시 타입이 기본형으로 설치됨
84B	타입→엔지니어드스톤	148,500	148,500	1,336,500	

③거실&주방 바닥 변경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B	강마루→거실&주방 바닥타일	1,089,000	108,900	980,100	미선택시 강마루가 기본형으로 설치됨.
75A/B	강마루→거실&주방 바닥타일	1,375,000	137,500	1,237,500	
84A/B	강마루→거실&주방 바닥타일	1,595,000	159,500	1,435,500	

④현관 중문 설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폴딩도어	1,672,000	167,200	1,504,800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으며, 도배 마감됨
59B, 75A, 75B, 84A, 84B	3연동 슬라이팅형 도어	1,463,000	146,300	1,316,700	

⑤침실1 가구 설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59B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3,520,000	352,000	3,168,000	미선택시 도배 마감됨
75A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3,872,000	387,200	3,484,800	
84A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3,993,000	399,300	3,593,700	
84B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3,993,000	399,300	3,593,700	

※75B타입에는 침실1 가구 설치(유상옵션) 선택이 제외됨

⑥빌트인 냉장고 설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모델명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2EA	삼성전자 / (쉐프)RB33R8798SR	3,993,000	399,300	3,593,700	

⑦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모델명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1EA	삼성전자 / RQ22K5L01EC	1,166,000	116,600	1,049,400	

⑧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 변경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모델명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인덕션 2구+가스 1구	SK매직 / GRA-B322H	748,000	74,800	673,200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기본형으로 설치됨
	인덕션 2구+HL 1구	SK매직 / ERA-BT030	748,000	74,800	673,200	
	인덕션 3구	SK매직 / IHR-BF311	869,000	86,900	782,100	

⑨빌트인 전기 오븐 변경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모델명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전기오븐(고급형)	삼성전자 / NQ50H5533KS	440,000	44,000	396,000	미선택시 빌트인 전기오븐(일반형)이 기본형으로 설치됨
	IOT스팀오븐	SK매직 / EON-B440SA	649,000	64,900	584,100	

⑩빌트인 식기세척기 설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모델명	계약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 DW50R4055BB	528,000	52,800	475,200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됨

⑪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이외 유상 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중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유상 옵션 설치 공사는 해당 유상옵션의 구입시기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 납부계좌가 분양계좌 납부계좌와 상이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동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유상 옵션은 유상 옵션 계약 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선택시 옵션 가능 일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입주 후 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적용됨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선택시 옵션 가능 일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입주 후 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적용됨 • 상기 유상옵션 품목은 신청행렬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가타의 별 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냉매 선 라인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1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실 및 침실1에 기본 설치되는 냉매배관 및 관련 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외에는 에어컨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시 냉매배관 및 관련 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시 냉매배관 및 관련 시설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실외기 실외기 공간 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지장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실외기 실외에는 에어컨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재고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시 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 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 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기동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외 입주자가 에어컨 별도 설치 시 누수 전장소상 등에 대한 하자는 당시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전기 발열체 온풍기 등에 의한 보조 난방 등을 설치할 경우 전장소상 등에 대한 하자는 당시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전기 발열체 온풍기 등에 의한 보조 난방 등을 설치할 경우 전장소상 등에 대한 하자는 당시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해당 설치공간은 빈 공간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빌트인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됨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스팀오븐고급형 전기오븐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 및 전기오븐의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2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바닥 마감 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 없으시기 바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바닥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 패턴이 다를 수 있음 • 바닥 마감 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마루, 현관 디딤판 등 바닥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됨 • 75B타입은 침실1 평면 형태상 가구 설치가 불가능 하여 이향가구 설치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능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입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59A타입에 설치되는 폴딩형 중문은 형이형 타입으로 하부가 고정되지 않아 개폐시 도어의 움직임이 있으며, 도어를 열었을 때 침실 또는 현관등 보행동선에 간섭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관 중문 및 침실1 가구의 우리는 ST 기능화우리로 과도하게 개폐할 경우 유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음 • 현관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고 도배 마감됨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함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에 따라 현관 디딤석의 위치및 크기 등은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시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 일부 품목 및 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①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48-910021-63304	㈜케이씨씨건설

②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비는 계약금(10%) 잔금(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예정 월 출입일자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이 입금증 이체확인서 등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함)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되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완료 시 고지 된 것으로 하고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착오납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①공통 (*주택법_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정보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조명기구 등에서 인정되는 품목 기본형 제품 및 시공 방법 등 에 대한 내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 점검대장 발췌 벽지 벽노 다열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옵션의 시정을 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 공사 일정 이후에는 제세공과금 고지 및 가스 비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자금납입 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가 해명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채도시보증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이 아파트는 실외기실을 위하여 견물표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보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시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에 따른 혼잡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공사 및 모델세대 일부 면적 조정 등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차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KCC건설 환경특화설계 디자인 매뉴얼 개정이 완료된 후 당 현장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이 개정된 매뉴얼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변경에 대한 모든 관련을 조합 및 시공사에 위임함 • 본아파트는 단지 배치 특성상 도별 형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충돌 때문 입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침해 조망제한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바닥된 설계도서 및 창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시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현장시설 인프로 도로 소로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흡하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_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하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도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지상 외부도로 횡단보도 보도 장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도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종교부지(교회) 외곽 보도는 시업부지 외 구간으로써 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에 의한 성토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실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평형면적(㎡)×0.3025 또는 평형면적(㎡÷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시는 주택형 0.7평 이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숫자 내 청약 시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처음의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시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열기준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을 잃어 없이 시청이 시행되므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시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없어하는 주택공급 신청서의 (시행)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일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 보조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 및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시업자는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2 대지경계 구획 기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정강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정산 정산하게 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액은 개인정보 요구 시 사용정보의 이용 및 보증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전 시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흡하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종 옵션 선택에 따라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 없으시기 바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바닥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 패턴이 다를 수 있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마루, 현관 디딤판 등 바닥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됨 • 75B타입은 침실1 평면 형태상 가구 설치가 불가능 하여 이향가구 설치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입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59A타입에 설치되는 폴딩형 중문은 형이형 타입으로 하부가 고정되지 않아 개폐시 도어의 움직임이 있으며, 도어를 열었을 때 침실 또는 현관등 보행동선에 간섭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관 중문 및 침실1 가구의 우리는 ST 기능화우리로 과도하게 개폐할 경우 유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음 • 현관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고 도배 마감됨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함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에 따라 현관 디딤석의 위치및 크기 등은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시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 일부 품목 및 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 계좌 ①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48-910021-63304	㈜케이씨씨건설

②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비는 계약금(10%) 잔금(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예정 월 출입일자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이입금증 이체확인서 등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함)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되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완료 시 고지 된 것으로 하고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착오납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①공통 (*주택법_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정보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조명기구 등에서 인정되는 품목 기본형 제품 및 시공 방법 등 에 대한 내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 점검대장 발췌 벽지 벽노 다열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옵션의 시정을 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 공사 일정 이후에는 제세공과금 고지 및 가스 비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자금납입 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가 해명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채도시보증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이 아파트는 실외기실을 위하여 견물표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보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시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에 따른 혼잡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공사 및 모델세대 일부 면적 조정 등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차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KCC건설 환경특화설계 디자인 매뉴얼 개정이 완료된 후 당 현장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이 개정된 매뉴얼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변경에 대한 모든 관련을 조합 및 시공사에 위임함 • 본아파트는 단지 배치 특성상 도별 형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충돌 때문 입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침해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바닥된 설계도서 및 창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시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현장시설 인프로 도로 소로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흡하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_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하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도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지상 외부도로 횡단보도 보도 장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도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종교부지(교회) 외곽 보도는 시업부지 외 구간으로써 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에 의한 성토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실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평형면적(㎡)×0.3025 또는 평형면적(㎡÷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시는 주택형 0.7평 이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숫자 내 청약 시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처음의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시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열기준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을 잃어 없이 시청이 시행되므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시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없어하는 주택공급 신청서의 (시행)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일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 보조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 및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시업자는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2 대지경계 구획 기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정강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정산 정산하게 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액은 개인정보 요구 시 사용정보의 이용 및 보증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전 시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흡하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종 옵션 선택에 따라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 없으시기 바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바닥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 패턴이 다를 수 있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마루, 현관 디딤판 등 바닥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됨 • 75B타입은 침실1 평면 형태상 가구 설치가 불가능 하여 이향가구 설치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입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59A타입에 설치되는 폴딩형 중문은 형이형 타입으로 하부가 고정되지 않아 개폐시 도어의 움직임이 있으며, 도어를 열었을 때 침실 또는 현관등 보행동선에 간섭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관 중문 및 침실1 가구의 우리는 ST 기능화우리로 과도하게 개폐할 경우 유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음 • 현관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고 도배 마감됨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함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에 따라 현관 디딤석의 위치및 크기 등은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시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 일부 품목 및 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①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48-910021-63304	㈜케이씨씨건설

②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비는 계약금(10%) 잔금(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예정 월 출입일자에 완납하여야